

본 교단 제107회 총회 시 개정된 총회 헌법시행규정

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시행규정		
현 행	개 정 안	비고
제2장 정치	제2장 정치	
제26조 [직원 선택] [개정 2012.9.20, 2017.9.21, 2018.9.13] 1. 장로, <u>집사</u>, 권사를 선택할 때 당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. 헌법 정치 제41조 2항(당회 추천)의 경우 반드시 당회장(대리당회장)이 참석하여야 하고, 헌법 정치 제64조 2항(세례교인 비례)을 지켜야 한다. 단, 최초 당회 조직 시 장로 2인을 동시 선택 못한 경우 혹은 1인이 결원일 경우에는 후에 1인을 선택할 수 있다. 5. 장로, <u>집사</u>, 권사를 선택하는 투표는 1회에 연속하여 혹은 한 노회 기간 동안 투표횟수를 합하여 3차까지 할 수 있고, 투표방법(변경포함)은 남은 횟수에 한하여 당회와 공동의회가 투표장에서도 정할 수 있다. 7. 헌법 권징 제4조 1항, 제6조 2항에 의거 목사, 장로, <u>집사</u>, 권사를 신임 투표로 사임시킬 수 없다. 11. 당회의 결의로 세례교인 중에서 <u>협동(명예)집사</u>, <u>협동(명예)권사</u>를 세워 <u>집사</u>와 권사의 직무를 협력하게 할 수 있으나 안수는 하지 않는다. 정년까지 <u>서리집사</u>에 준하여 제직회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. [신설 개정 2012.9.20.]	제26조 [직원 선택] [개정 2012.9.20, 2017.9.21, 2018.9.13] 1. 장로, <u>안수집사</u>, 권사를 선택할 때 당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. 헌법 정치 제41조 2항(당회 추천)의 경우 반드시 당회장(대리당회장)이 참석하여야 하고, 헌법 정치 제64조 2항(세례교인 비례)을 지켜야 한다. 단, 최초 당회 조직 시 장로 2인을 동시 선택 못한 경우 혹은 1인이 결원일 경우에는 후에 1인을 선택할 수 있다. 5. 장로, <u>안수집사</u>, 권사를 선택하는 투표는 1회에 연속하여 혹은 한 노회 기간 동안 투표횟수를 합하여 3차까지 할 수 있고, 투표방법(변경포함)은 남은 횟수에 한하여 당회와 공동의회가 투표장에서도 정할 수 있다. 7. 헌법 권징 제4조 1항, 제6조 2항에 의거 목사, 장로, <u>안수집사</u>, 권사를 신임 투표로 사임시킬 수 없다. 11. 당회의 결의로 세례교인 중에서 <u>협동(명예)안수집사</u>, <u>협동(명예)권사</u>를 세워 <u>안수집사</u>와 권사의 직무를 협력하게 할 수 있으나 안수는 하지 않는다. 정년까지 <u>집사</u>에 준하여 제직회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. [신설 개정 2012.9.20.]	〈개정〉 ‘서리집사’ 호칭 개선 방안으로 현행 헌법의 ‘집사’를 ‘안수집사’로, ‘서리집사’를 ‘집사’로 개정
제27조 [무효의 기산과 적용] 3. 무효기간은 향존 직원(목사, 장로, <u>집사</u>, 권사)으로 임직 시에 적용하고 이미 임직되어 시무 중인 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시무, 직분, 권리, 신분을 제한할 수 없다.	제27조 [무효의 기산과 적용] 3. 무효기간은 향존 직원(목사, 장로, <u>안수집사</u>, 권사)으로 임직 시에 적용하고 이미 임직되어 시무 중인 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시무, 직분, 권리, 신분을 제한할 수 없다.	//
제30조 [임시당회장과 대리당회장의 권한] 2. 헌법 정치 제67조 3항(당회장의 유고 또는 기타 사정)에 의거 우선적으로 당회장이 대리당회장을 위임하거나 혹은 이 규정 제16조의 8의 4항의 사유로 당회원이 합의하여 대리당회장을 청한 경우, 대리당회장은 위임 받은 범위 내의 권한만을 행사하여야 한다. 그러나 범위를 정하지 아니하거나 포괄적으로 위임 받은 때에도 헌법 정치 제68조 4항 장로, <u>집사</u>, 권사 임직권과 제7항 권징	제30조 [임시당회장과 대리당회장의 권한] 2. 헌법 정치 제67조 3항(당회장의 유고 또는 기타 사정)에 의거 우선적으로 당회장이 대리당회장을 위임하거나 혹은 이 규정 제16조의 8의 4항의 사유로 당회원이 합의하여 대리당회장을 청한 경우, 대리당회장은 위임 받은 범위 내의 권한만을 행사하여야 한다. 그러나 범위를 정하지 아니하거나 포괄적으로 위임 받은 때에도 헌법 정치 제68조 4항 장로, <u>안수집사</u>, 권사 임직권	//

권, 제8항 부동산 관리권은 행사할 수 없다. 단, 당회의 결의로 <u>서리집사</u> 를 임명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임명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인사권은 행사할 수 없다. [개정 2012.9.20.]	과 제7항 권징권, 제8항 부동산 관리권은 행사할 수 없다. 단, 당회의 결의로 <u>집사</u> 를 임명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임명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인사권은 행사할 수 없다. [개정 2012.9.20]	
제36조 [헌법위원회의 구성, 권한, 질의해석, 헌법개정] [개정 2012.9.20.] 4. 헌법위원회가 법리판단을 할 때 재판국의 판결에 관하여 법리판단을 할 수 있으며, 이 판단이 헌법 권징 제123조 제6항에 해당될 때 재심청구권자는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. [신설 개정 2012.9.20]	제36조 [헌법위원회의 구성, 권한, 질의해석, 헌법개정] [개정 2012.9.20.] 4. 헌법위원회가 법리판단을 할 때 재판국의 판결에 관하여 법리판단을 할 수 있으며, 이 판단이 헌법 권징 제123조 제7항에 해당될 때 재심청구권자는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. [신설 개정 2012.9.20]	〈개정〉 헌법권징 조항 변경에 따른 근거 마련
제3장 권징	제3장 권징	
제43조 [재판비용] 1. 헌법 권징 제28조에 의한 재판비용의 예납절차는 재판을 수행할 당해 치리회에 예납하고 그 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. 2. 헌법 권징 제28조에 의한 재판비용의 예납액은 다음과 같다. [개정 2014.9.25, 2019.9.26] ① 고소(고발)·위탁재판의 청원·쟁송 소제기 당회 : 금 일백만 원 노회 : 금 이백만 원 총회 : 금 삼백만 원 ② 항소 노회 : 금 이백만 원 ③ 상고 총회 : 금 삼백만 원 ④ 이의(불복)신청·재심청구·항고·재항고 당회 : 금 일백만 원 노회 : 금 이백만 원 총회 : 금 삼백만 원 3. 예납한 재판비용의 금액은 재판의 결과를 불문하고 반환하지 않고 그 치리회에 귀속한다.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반환한다. [개정 2012.9.20] ① 헌법 권징 제47조의 화해의 중용에 의하여 화해가 성립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거나 이 법에 의하여 화해로 간주한 때 ② 헌법 권징 제88조 3항에 의하여 고소의 취하로 인한 기소기각의 판결을 한 때 4.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재판비용을 면제한다. [개정 2012.9.20, 2014.9.25] ① 헌법 권징 제51조에 의한 치리회장과 임원이 고발을 한 때	제43조 [재판비용] 제1항 현행대로 제2항 현행대로 제3항 현행대로 제4항 ①~⑧호 현행대로	

② 헌법 권징 제54조 2에 의한 치리회장이 직권으로 기소의뢰를 한 때 ③ 헌법 권징 제90조 제1항에 의하여 기소위원장이 상소를 한 때 ④ 헌법 권징 제127조 제1항에 의하여 기소위원장이 재심청구를 한 때 ⑤ 수습전권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재판국에 이의 신청을 할 때 ⑥ 수습전권위원회에서 고소(고발)할 때 ⑦ 교회, 노회, 총회의 감사위원회가 치리회의 각 부와 위원회 및 총회산하기관의 재정 및 행정 비리의 죄과 사실에 대하여 기소의뢰 혹은 고소·고발을 할 때 ⑧ 총회 산하 단체와 기관 관련 100만 원 이상 재정 비리 및 부정행위 당사자에 대하여 총회 임원, 총회 산하 단체와 기관의 이사, 총회가 인정한 연금가입자회 임원이 고소·고발을 할 경우나 총회장이나 총회 산하 단체와 기관 이사회가 기소 의뢰할 때 <u>⑨ 앞의 ⑦,⑧에 대하여 해당 치리회장이 다시 위탁재판을 청원할 때나, 앞의 ⑦,⑧에 대하여 해당 치리회장이 15일 이내에 고소(고발)장이나 기소의뢰장을 접수시키지 않거나 또는 위탁재판의 청원을 하지 않아 부전지를 첨부하여 제출할 때</u>	⑨호 삭제	〈삭제〉 헌법 권징 제120조 (위탁재판의 청원), 제121조(위탁재판 청원의 처리)와 헌법 권징 제14조(심판사항), 제20조(심판사항), 제26조(심판사항)와 상충되는 조항임.
제72조 [위탁재판의 청원·책별(권징) 적용과 범위] 1. 헌법 권징 제120조에 의하여 당회장이 노회 재판국에 위탁재판을 청원할 때에는 권징 제10-1호 서식으로 한다. 2. 헌법 권징 제120조 1항에 의한 재판의 전례가 없어 재판하기가 극히 어려운 경우는 당회의 결의에 의하여 당회장이 위탁재판을 노회에 청원하여야 한다. [신설 개정 2012.9.20.] 3. 헌법 권징 제120조 2항에 의한 당회나 교회의 분쟁으로 당회 재판국의 구성 또는 당회의 회집이 불가할 때에는 당회장이 직권으로 위탁재판을 노회에 청원하여야 한다. [개정 2012.9.20.] 4. 헌법 권징 제120조 3항에 의한 기타 치리회의 사정상 당회 재판국에서 재판하기가 심히 어려운 경우에도 전항과 같으며 그 경우란 다음의 각호를 말한다. [신설 개정 2012.9.20] ① 당회장이 고소인(고발인)이 된 경우 ② 당회장이 피고소인(피고발인)이 된 경우 ③ 기타 당회 또는 제직회나 공동의회의 사정상 당회 재판국에서 재판하기가 심히 어려운 경우	제72조 [위탁재판의 청원·책별(권징) 적용과 범위] 제1항 현행대로 제2항 현행대로 제3항 현행대로 제4항 현행대로	

5. 헌법 정치 제64조 1항에 의한 당회가 없는 미조직교회 또는 제65조에 의한 폐당회가 된 교회와 장로 2인 미달 교회와 당회가 폐지된 교회로 재판국의 구성이 불가할 때에는 제3항과 같다. [개정 2012.9.20.] 6. 각 치리회나 총회 산하 단체와 기관에서의 부정이나 재정 비리 행위 당사자에 대하여 총회장 혹은 총회 산하 단체와 기관의 이사회, 치리회의 감사위원회가 결의하여 <u>해 교회 당회장에게 기소 의뢰를 요청할 시(목사의 경우는 해 노회에), 해 당회장이나 노회장은 15일 이내에 즉시 기소의뢰나 위탁재판청원을 하여야 한다.</u> [신설 개정 2014.9.25.]	제5항 현행대로 6. 각 치리회나 총회 산하 단체와 기관에서의 부정이나 재정 비리 행위 당사자에 대하여 총회장 혹은 총회 산하 단체와 기관의 이사회, 치리회의 감사위원회가 결의하여 <u>총회재판국에 고소(고발)하여 책벌할 수 있다.</u>	헌법 권징 제120조 (위탁재판의 청원), 제121조(위탁재판청원의 처리)와 헌법 권징 제14조(심판사항), 제20조(심판사항), 제26조(심판사항)와 상충되는 조항임
---	---	--